

창원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4가단347 판결 [건물명도 등]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B

피 고 1. C

2. D

변 론 종 결 2024. 5. 10.

판 결 선 고 2024. 5. 24.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4. 2. 1.부터 별지1 기재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박규도

별지